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는”을 “관리·처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할”을 “관리·처분할”로, “관리재산”을 “관리·처분 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 자금의 용자대상은 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산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려는 경우”로, “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등”을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자율 등”으로, “미리”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해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채권·채무, 청산 진행 소요비용, 해산법인이 제시한 융자금의 세부 내역 및 융자금에 대한 담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해산법인이 신청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⑥ 재단은 제1항의 사학기관 또는 제2항의 해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우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금을”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학기관”을 “사학기관 또는 해산법인”으로 한다.

- ② 해산법인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1. 해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현황
- 2. 해산법인의 채권 및 채무 현황
- 3. 해산법인이 청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4. 해산법인이 신청하는 용자금의 세부 내역 및 용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5. 용자목적별 사용계획서
6. 용자금 상환계획서
7. 기타 재단이 해산법인에 대한 용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한 서류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u>관리</u> 는 법 제1조의2 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 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 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u>관리할</u> 때에는 그 <u>관리재산</u> 에 대한 별 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u>처분</u>) ①----- ----- <u>관리·처분</u> 은 ----- ----- ----- ----- -----. ②----- ----- ----- <u>관리·처</u> <u>분할</u> --- <u>관리·처분재산</u> ----- ----- -----.
제4조(자금의 용자대상·용자조 건 및 방법) ① <u>법 제21조제2항</u> <u>에 따른</u> 자금의 용자대상은 사 학기관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자금의 용자대상·용자조 건 및 방법) ① <u>법 제19조제1항</u> <u>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사학지</u> <u>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u> <u>라 한다)</u> -----. ② <u>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학</u> <u>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u> <u>“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u> 자금 의 용자대상은 법 제6조제1항제 3의2호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으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
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상환기간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연체이
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
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로 한다.

③-----

----- 경우 또
는 제2항에 따른 해산법인의 청
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 한도액·이자율·상
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연체이자율 등--- 매년 -----
-----,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④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해산법인이 보유
한 자산, 채권·채무, 청산 진행
소요비용, 해산법인이 제시한
융자금의 세부 내역 및 융자금
에 대한 담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해산법인이 신청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
한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제1항의 사학기관 또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 사
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
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는 제2항의 해산법인이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
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우 융
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
수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해산법인이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
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단
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
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현
황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용자여부·용자액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2. 해산법인의 채권 및 채무 현황

3. 해산법인이 청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4. 해산법인이 신청하는 용자금의 세부 내역 및 용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5. 용자목적별 사용계획서

6. 용자금 상환계획서

7. 기타 재단이 해산법인에 대한 용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한 서류

③ ----- 제1항 및 제2항-----

----- 사학기관 또는 해산법인----

제8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생략)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부	
연 락 처	(044) 203 - 6932